◎ 영국 - DAC 6 보고 범위 축소

■ 2020년 12월 31일 영국과 EU 간의 자유무역협정(FTA)에 따라서 영국의 EU 강제보고의무(DAC 6) 범위가 축소됨[1)]

○ 영국은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더 이상 EU DAC 6을 적용하지 않으며, OECD의 강제보고규정(Mandatory Disclosure Rules: MDR)을 적용하기로 결정함

○ 이에 영국은 국제 거래(Cross-boarder arrangement) 중 자동정보교환과 수익적 소유자와 관련된 지표인 Category D에 관해서만 OECD의 강제보고규정에 따라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, DAC 6을 적용할 의무가 없음

- Category D는 투명하지 않은 법적·수익적 소유권 사슬(chain)을 이용한 거래 및 자금세탁방지법 규정이 강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를 활용한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[2)]

○ 변경사항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소급 적용됨

<자료 수집 및 정리: 변정윤 연구원>

1) 영국정부, The International Tax Enforcement (Disclosable Arrangements) (Amendment) (No. 2) (EU Exit) Regulations 2020, https://www.legislation.gov.uk/uksi/2020/1649/contents/made, 검색일자: 2021. 3. 2; KPMG, DAC 6 - Significant reduction in scope of the UK implementation, https://home.kpmg/uk/en/home/insights/2021/01/tmd-dac6-significant-reduction-scope-of-the-uk-implementation.html, 검색일자: 2021. 2. 18.

2) 삼일회계법인, Samil Global Tax Update, https://www.pwc.com/kr/ko/publications/global_tax_update/samilpwc_global-tax-update_mar2020.pdf, 검색일자: 2021. 2. 19.